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2년 7월 4일 (목) 낮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 회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발 표 1 병역법 개정안

박서진 변호사

발 표 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이재승 교수

패 널

장영달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덕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장복희 교수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조문순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인권센터)

오만규 교수 (삼육대학교 신학부장)

대만 치엔시치에簡錫堉 전 입법의원

자료집 차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경과	4
병역법 개정안	7
대체복무요원판정 절차법안 개요	14
대체복무요원판정 절차법(안)	18
참고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23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32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4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경과

2000년	3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몇몇 사회단체들이 군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토론회 준비
2001년	1월 초	한겨레21에서의 기사화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됨
	3월 17,8일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진행. 비공개 활동가 워크샵. 며칠 후 징병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감. 운영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음.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고 이후 보다 대중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5월 31일 공개워크샵을 위한 준비모임 구성.
	5월 초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여호와증인들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여 법률지원 시작.
	5월 15일	변호인단이 변론을 맡은 첫 군사재판. 지금까지의 군사재판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3년형이 종전대로 선고되었고 이후 모든 군사재판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3년형이 구형됨.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진행. 100여명 참석. 제철일 안식일예수재림교, 89년 양심선언자가 참석하여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증언을 하였음.
	6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이단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는 내용의 반대성명발표. 민주당 천장배, 장영달 의원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6월로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청회가 7월로 연기되고 이후 결국 무산됨.
	7월 8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을 위한 한국 참관단(이석태 변호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군경전사순직자가족협의회 이애련 회장, 최영금 선생, 인터넷신문 대자보의 이창은 발행인,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홍창욱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운 차장,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 임치윤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이 대만 방문.

	8월 2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에 관한 보고회 개최.
	9월 27~30일	김수정, 오재창 변호사, 최정민 활동가가 반전인터넷서널(WRI) 연례 세미나 참석. 한국의 상황을 최초로 국제무대에서 발언.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최초로 가족 중 같은 죄목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 징역 2년 6월 선고.
	10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개최
	10월 23일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불가 입장 밝힘.
	10월 24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방문.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림.
	11월 17일	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개최
	11월 2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접수.
	12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 연구센터에서 ‘소수자의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개최.
	12월 17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 병역거부선언.
	12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2002년	1월 11일	퀘이커 평화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동아시아 담당관 한국 방문.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을 알림.
	1월 25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황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제네바 사무국에 제출.(민변)
	1월 29일	서울 남부지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경수(21, 대학생)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사건심리를 정지하고 현재에 당 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제청을 결정
	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2월 7일	오태양씨 1차 영장 실질심사, 출두에 앞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연대회의 기자회견 가짐. 불구속 결정
	2월 16일	검사의 재차 사전영장 발부로 2차 영장 실질심사. 구속수사 사유가 1차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재기각.
	2월 18일	KNCC 인권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개최

2월 22~25일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토론회 진행
3월 4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실천불교전국승가회·인드라마생명공동체·좋은벗들 ‘불교의 평화사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3월 25일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3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제58차 UN인권위원회 민간단체 참가단 기자회견
4월 2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5월 8일	대체복무입법청원 1차 수요캠페인 및 서명운동 학생단체 기자회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
5월 12일	불교연대 주최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연등축제 캠페인
5월 15일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제 2차 수요캠페인
5월 22일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제 3차 수요캠페인
5월 24일	전학협 주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평화인권문화제 ‘충을 버려’
5월 29일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제 4차 수요캠페인 및 문화제
5월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군대반대 사이트 이용정지 결정
6월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6월 17일	불교연대 주최로 박노자 교수 초청 강연회 - 호국불교와 폭력의 문화를 넘어 ; 양심적병역거부의 의미를 묻는다
6월 19일	오태양씨 첫 재판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뤄짐
6월 26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거부자 가석방 시행의 차별행위 개선에 관한 탄원서’ 제출

병역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9.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第5條 (兵役의 種類)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1. 현역:(생략) 2. 예비역:(생략) 3.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생략) 5. 제2국민역:(생략)	第2條 (定義) (중략) <u>9의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대체복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u> 第5條 (兵役의 種類) (중략) 3.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u>대체복무요원으로</u>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26-33)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34-35의2)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 산업기능요원 복무(36-43) 第42條（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第43條（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26-33)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34-35의2)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36-43) 제4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43의2-43의4)(신설) 第42條（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또는 <u>대체복무요원</u>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u>대체복무요원</u>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개정) 第43條（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u>대체복무요원</u>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43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신설) 第43條의 2(代替服務要員의 編入)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체복무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 판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第43條의 3(代替服務要員의 業務) ①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보호, 지원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④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 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⑤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3條의 4(代替服務要員의 身上移動通報 및 處理)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명령 또는 정당한 복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현행법	개정안
第44條（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第49條（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等）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第44條（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단, 대체복무예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第49條（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等）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대체복무예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보호, 지원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개정안
第53條（戰時勤勞召集對象等）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44조 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자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第55條（教育召集對象等）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가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 第58條（醫務法務軍宗將校等の 兵籍編入）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한의사자격이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자격을 인정한사람 (②항, ③항 생략)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第53條（戰時勤勞召集對象等）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44조 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자 2. 제44조 단서에 의해 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第55條（教育召集對象等）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u>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u>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가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u>대체복무요원 제외</u>)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 第58條（醫務法務軍宗將校等の 兵籍編入） (중략)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u>다만, 군종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u>(개정, 단서 신설)

현행법	개정안
第60條（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第60條（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중략) ②(중략) <u>4. 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 판정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사람(신설)</u>
第65條(兵役處分變更등)①현역병(제21조,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 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3. 수형·고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⑦생략	第65條(兵役處分變更등)①현역병(제21조,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 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u>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을 할 수 있다.</u> 1. 2. 3. (생략) 4. <u>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판정을 받은 자</u> ②-⑦ (생략) <u>⑧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하며, 현역 으로 복무한 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신설)</u>

현행법	개정안
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第75條 (報償 및 加療)④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第75條 (報償 및 加療)④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또는 <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①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후략)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①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또는 <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후략)
第88條(入營의 忌避) (내용 생략) 第89條(公益勤務要員등의 代理服務) (내용 생략) 第89條의2(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離脫) (내용 생략)	第88條(入營의 忌避)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 第89條(公益勤務要員등의 代理服務)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 第89條의2(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離脫)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개요

대체복무법안은 기본적으로 천정배의원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천정배의원의 대체복무법안은 관할관청, 신청과 결정, 대체복무영역(시설)의 지정, 징계와 처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입법연구단에서는 이를 기본적으로 이원화시켰다. 대체복무를 병역의무의 이행수단으로 파악하지는 근본전제에 출발하였다.

대체복무역을 병역의 일종으로 조정함으로써 병역법은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기간,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대체복무자의 각종의무부담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은 대체복무자 판정절차, 관할기관을 규정하는 순수한 절차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독일의 병역거부법에 해당한다.

1. 대체복무위원회

1) 관할기관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대체복무판정과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결정기능도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산하지방위원회로 구성하고, 군복무중인 자의 대체복무신청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2) 보건복지부

대체복무판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UN인권위원회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복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국방부/병무청과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소속하는 위원회로 하였다. 독일의 예가 이와 비슷하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고려하였으나 대체복무영역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위원의 자격

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설정하였다. 교수, 변호사, 성직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처분은 헌법상의 권리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위원장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위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4) 중앙위원회—재심기관

중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총괄한다. 구체적인 판정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대체복무판정에 대하여 재심기관으로 상정하였다.

5) 지방위원회——일차적 판정기관

지방위원회는 대체로 지방병무청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위원의 자격, 지방위원회의 구성, 신분보장은 중앙위원과 같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일차적인 판정권을 갖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판정권만 부담시켰다.

6)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소위원회

위원의 숫자는 중앙위원회는 7인으로, 지방위원회는 5인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징계소위와 판정소위로 나누었다. 그러나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

2. 대체복무자 인정절차

1) 신청사유

① 신청사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에 국한한다면 지나치게 협소하게 주류종교집단의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양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충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심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②전쟁거부정도

전쟁거부정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는 직접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전(자위전쟁)과 불법적인 공격전쟁의 구별, 국내전쟁과 해외원정의 구별, 재래식전쟁과 핵전쟁의 구별, 동족전쟁과 이민족간 전쟁의 구별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만이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도 이 점을 병역거부법에 명기하고 있다.

2) 신청기간

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군인 기타 병역의무이행중인 자의 경우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현역군인이 1년후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전투부문의 전환복무신청으로 인정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특히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매우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1년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4) 신청양식

독일의 경우는 대체복무신청서(관인서식), 이유서(자유서식), 이력서(자유서식)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심사절차의 엄격성문제

심사절차는 엄격하게 할 것인지 비교적 느슨한 서류심사로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절차의 엄격성여부는 대체복무신청을 철저하게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대체복무요원 정원제와 같은 군인력배치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상관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다.

6) 재심과 소송, 재신청의 제한문제

지방위원회의 각하 내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중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의 배제문제는 삭제하였다. 또한 기각결정을 받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추후 재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과거의 신청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7) 결정시한

판정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군인, 여타 근무자, 예비군)인 경우에는 보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정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하였다. 군인인 경우에는 결정시까지 집총근무를 면제하였고, 예비군은 훈련소집을 유예하였다.

3. 경과조치

1) 사면복권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자의 범죄기록의 말소를 포함하여 사면복권을 규정하였다.

2) 복역중인 자의 자동전환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집행중인 자가 만기출소를 목전에 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신청한 경우에만 대체복무신청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완전거부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면복권의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3) 기간산입

구속되었거나 복역중인 자가 대체복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및 복역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하였다.

4. 완전거부자

완전거부자의 인권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지만 이 법에서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고려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정한 봉사활동을 보다 장기간 하도록 하는 대안(독일의 예)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불가침적 인권인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도입된 대체복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복무”라 함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법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의무를 말한다.
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처분을 받고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이바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집”이라 함은 대체복무처분을 받은 자에게 복무영역, 장소, 기간을 지정하여 대체복무활동을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체복무시설”이라 함은 대체복무요원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적 및 사적 시설 또는 활동단체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처분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
5. “비전투부문 복무”라 함은 군대조직 내에서 집중근무를 배제한 복무를 말한다.

제2장 대체복무위원회

제 3조 (대체복무위원회)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관련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병무청 소재지별로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역군인과 관련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현역군인대체복무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제 4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정치학·평화학 등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종교계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으로 보한다.
- ④ 중앙위원회는 판정소위원회와 징계소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되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 ⑤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소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위원을 사무국장으로 보한다.

제 5조 (중앙위원회의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대체복무 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2. 현역군인의 비전투부문 복무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3.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재심
4. 대체복무시설의 지정처분
5.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및 제안권

제 6조 (중앙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와 결정)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 ①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확대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와 결정에 대해서는 제6조와 제7조가 준용된다. 제6조 제4항의 퇴직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위원장이 통괄한다.

제 9조 (지방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판정한다.
- ② 위원회는 기타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 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11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경우
-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제 12조 (별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13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체복무자의 판정절차

제 14조 (입영대상자의 신청과 고지의무)

- ① 병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자는 신체검사 일로부터 입영기일 30일 이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신청에 있어서 대체복무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 ④ 병무청은 신체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인정절차, 복무내용을 수검자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병역의무이행중인 자의 신청)

- ① 현역군인은 입영후 1년 이내에 현역군인대체복무위원회에, 여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입영후 1년이 도과한 현역군인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군대내의 비전투부문에서의 복무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현역군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 또는 전환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대장은 신청인의 집총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 ③ 예비군은 기한의 제한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소집을 유예한다.

제 16조 (결정)

- ① 지방위원회 및 현역군인대체복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신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각하결정을 한다.
 - 2.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 3.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인정결정을 한다.
- ② 인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당사자의 희망·자질·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체복무영역을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 1항의 경우에는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15조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17조 (재심)

- ① 제15조 1항 1호와 2호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기각결정 또는 인정결정을 한다.
- ③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 ④ 신청인은 제16조 제2항의 지정처분만을 독립하여 다룰 수 없다.
- ⑤ 위원회는 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 18조 (심사상의 조치)

-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3.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4.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
- ②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청인이 이 법이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그 구속기간이나 복역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③ 이 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청에 따라 사면 복권된다. 제1항에 해당하지만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자도 출소후 신청에 따라 사면복권된다.
- ③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의 공포후 시행일 전이라도 그 사유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징집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후 30일이 도과한 후에도 연기신청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집연기는 종료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이재창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주의자의 태도라는 광의의 개념이 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광의의 무장행동(armed action)의 목적 또는 이에 사용되는 수단과 관련한 군복무에 대한 참여거부라는 개념 또한 부분적인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협의의 개념을 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작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현재까지 수십년간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이 징집 또는 집총을 거부하여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또는 항명죄로 처벌받아 왔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하여 단지 특정 종교만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왔으나 이들에 대한 민변 소속 변호인들의 변론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국방의 의무와 소위 헌법상 인정되는 양심 또는 종교적 권리에 따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와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유엔과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 차원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고찰하여 이러한 국제규범이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도 국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대안 등에 관하여 모색하기로 한다.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유엔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결의된 문서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유엔의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이라고만 함)

B규약은 1966. 12. 16. 유엔에서 채택, 1976. 3. 23. 발효되었고 1999. 8. 26. 현재 당사자국 수는 14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0. 4. 10. 이에 가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나. 유엔의 1978년 결의안

유엔은 1978. 12. 20. 채택한 결의안 33/165 1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군복무와 경찰근무에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2항에서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자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통과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동 결의안은 사용되는 군사력의 목적이 국제 공동체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군사활동에 대한 참여 거부권을 가장 명백하게 승인하고 있다.

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1987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채택한 결의 46호로써 위원회 차원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에서 각 국가에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라고 요청하였다.

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1989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3월 결의 1989/59로써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B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자체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유엔헌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켰으며, 각국이 이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3년 B규약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 22(4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B규약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General Comment)로서, "B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는 살상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 및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특정 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구별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 83호로써, 이전의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법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바.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5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5년 결의로써 1993년 83호 결의를 재확인하고 1993년 B규약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특정 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그들을 구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사.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8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 4. 2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77호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
-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사안에서 타당한지를 결정할 임무를 맡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또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non-combatant) 또는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한다.
- (5) 국가는 양심적 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 (7)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 (8)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거부자의 지위신청에 대한 정보가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 UN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를 UN 회원국, UN 전문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 (10) 다음 회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아.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0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77호 결의에 따라 2000. 4. 20.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의제에 관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결의 34호로써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1998년 77호 결의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각국의 현행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하여,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1998년 77호 결의에 기초한 대체복무형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가장 바람직한 관행의 수집과 분석을 준비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정부, 전문기관과 관련 정부간기구와 NGO로부터 구하고 위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소주제로 개최되는 2002년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 유럽에서의 관련 내용

가. 1950년 유럽인권협약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1950년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제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고,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나. 유럽이사회의 1967년 결의

유럽이사회의 자문의회(the Consultative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 결의 337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의 1987년 결의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각국에 대하여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권고 87(8)를 채택하였다.

라. 유럽의회의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 결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특히 199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1989/59에 의하여 승인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진정한 주관적 권리라고 확인하였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 (1)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 징병시 혹은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인정을 신청하는 복무 중 군대구성원의 권리
- (3) 징병대상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한 정보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 권리
- (4) 성격상 억제적이거나 형벌적이 아닌 진정한 대체복무
- (5)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4조 3항 b와 제9조를 수정하여 의정서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삽입할 것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현황에 대하여, 징병제의 실시유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유무, 대체복무형태의 인정유무 등을 구별요소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징병제가 없는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69개국이고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며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이다.

징병제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사 또는 군에서의 비무장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이다.

위 국가들에 있어서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이며,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1.4배 정도인데,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심의 자유는 자기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강제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

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자유 중에 양심강제로부터 자유나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양심실현의 자유 즉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는 부정설·긍정설·절충설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결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 제한받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한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런 맥락에서 (구)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 (중략)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판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어 왔다.

통계에 의하면 1991년 이후 총 4,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고 이 가운데 3,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한해 평균 400여 명의 집총거부자가 있어 현재 전국의 민·군·교·도·소에서 약 1,600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8년 77호 결의나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의 1987년 결의 및 유럽의회의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 결의 등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개인의 권리이며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어 국가가 이들을 구급하거나 형벌을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공익적이고 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B규약 제18조 등에 의거 인정되는 국제적 규범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관적 권리 또는 인권인데, 우리나라도 1990. 4. 10. B규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라는 B규약 가입 이후에는 조약체약국으로서 위와 같은 국제규범을 계속하여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국제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고문방지 결의 등 이미 국제관습법상 강행법규로 인식되는 규범에 대하여는 체약국 내지 그 결의 위반국에는 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강제력이 없고 단지 체약국에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으로 위반국가에 입국해서 증언을 청취하는 등의 권한도 없다.

먼저 각국이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자국의 법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먼저 각 국가마다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상 지위와 실행이 다르고 특히 개인이 국내법원에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도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 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하여 소위 일원론, 이원론 중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나아가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도입방법으로 수용이론, 변형이론 중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화하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이 국내법으로서의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일원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체로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고 특히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컨대 유엔헌장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규범은 일반 국내법률 보다는 상위라는 견해와 국제인권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혹은 헌법에 체화된 최고의 규범이라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위와 같은 국제규범은 적어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국제법적 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심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국가는 위와 같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 내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또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인 병역의무와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헌법의해석원칙 중 헌법이 서로 상반하는 내용의 규범 내지는 원칙을 최대한 조화시켜 동화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가능한 한 병역의무와 함께 양심적 병역의무를 조화시켜 동화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헌법 제6조 1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있는 일본 헌법 제98조 2항에 대하여 학자나 실무자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조약의 국내법에의 직접 적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은 인권조

약의 규정을 국내재판소에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B규약 위원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서 동 규약의 직접적용성과 자기집행성 그리고 국내법률에 대한 우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의 대외적 입장 또한 인권조약은 우리 국내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B규약 제2조 2항에는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양심적 거부권이 B규약 제18조 등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B규약의 체약국은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나 이에 필요한 절차상 필요조치를 취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B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심의하고 일반적 권고(recommendation of a general nature)를 총회에 제출하는 형식인 제40조의 보고제도(reporting system) 둘째, 인권이사회가 어떤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의 통보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는 방식인 제41조, 제42조의 국가간 이의신청(inter-state complaints) 제도 셋째, 개인이 규약상의 인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국제기관에 의한 개별심사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인 개인청원(individual petition)제도가 있는데, 다만 B규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는 소위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Ru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이 있어,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된 개인이 개인청원을 제출하려면 먼저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나오며...

이미 우리나라도 현역복무 이외의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분쟁지역중 하나로서 군사대치지역 국가인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유고는 물론, 중국 본토와 대치중인 대만 및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엄격한 요건이 요청되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징병제가 실시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그 거부권자로 처벌받고 있는 수는 가장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20명을 넘지 않는 정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평균 400명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상자가 많아 현재처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으로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적어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입법을 제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이재승

I. 서론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결의안 77호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병역거부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을 뿐 합당한 대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대체로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 모두 또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진행중인 민간봉사제도의 도입론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잘 정비된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표1. 유럽에서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의 도입현황

유형	국가명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한 국가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군대, 병역의무 또는 징집이 실제로 없는 국가	아이슬랜드, 몰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민간봉사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	라트비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민간봉사를 도입한 국가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다비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첸, 우크라이나, 헝가리
병역거부권을 부정하지만 비무장대체복무 또는 민간봉사를 도입한 국가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알바니아, *벨라루시, 사이프러스, 터키

*알바니아와 벨라루시는 헌법에 병역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정하는 국가이다.

출전: 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 Daten und Fakten zur Entwicklung von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Jahrgang 2000, 15쪽 이하(이하 Daten und Fakten으로 인용).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I. 독일에서의 병역거부권의 역사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청교도혁명기의 영국에서 수평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¹⁾ 양심적 반대자에 대한 비무장 대체복무의 인정은 1661년 매사추세츠 그리고 1673년 로드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다. 1757년에는 펜실바니아에서 퀘이커교도와 메노나이트파에게 군복무를 면제시키고, 민간봉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영국의 피트 내각은 병역대행인에 대한 비용대납을 조건으로 퀘이커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²⁾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발생과정에서 보면 종교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입된 계기도 종교적 이유에서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메노나이트파에 대한 은전령(恩典令)」³⁾이 첫 번째 사례이다. 이 규정은 프로이센에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도입한 병역법(1914)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1867년에 북독일연방에서 병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시민은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1868년의 내각령은 다시 메노나이트파들에게 비전투원으로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였다. 일차세계대전의 패배 후에 성립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도 없었다. 반면에 1935년 병역법을 통해 개병제를 도입한 나치제국에서는 병역은 독일국민에 대한 신성한 직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종교집단, 즉 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형제단, 왈도교도, 나사렛파, 재림파, 침례교도에 대한 박해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었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군형법에 의하여 사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강제수용소와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재산도 몰수당하였다.⁴⁾

나치제국의 패망 이후에 새로운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차원에서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였다.⁵⁾ 병역거부권은 당시 반전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전쟁방지의 법적

1) 이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퀘이커교도로 발전하였으며, 청교도혁명 당시에는 일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불발로 끝났지만 수평파들의 헌법대강인 인민협정(An Agreement of People 1647) 제4조 제2항은 군복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도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표자들이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2) 병역거부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Jürgen Schreiber, *Kriegsdienstverweigerung*, Bonn Uni. Dissertation, 1952; 阿部知二, 『良心的兵役拒否の思想』, 岩波書店, 1975 참조.

3) 정식명칭은 Gnadenprivilegium für die Mennonitengemeinden im Königreich Preußen v. 25. 3. 1780. 메노나이트파는 네덜란드에서 시몬스 메노(Simmons Meno)가 주창한 신교의 일파이다.

4) 전시 및 비상동원에 관한 특별형사령(Verordnung über das Sonderstrafrecht im Kriege und bei besonderm Einsatz 1938) §5 ①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군사력 붕괴죄로 사형에 처한다.

1.(생략)/ 2.(생략)

3. 자상을 통해서,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타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전부,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면하려고 시도하는 자

②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③사형 또는 징역형 외에 재산은 몰수한다.

인용은 Wolfgang Steinlechner, *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Vahl, 1990, 12쪽 이하.

5) 헤센주헌법(1946) 제69조 ①헤센주 시민은 평화, 자유, 국제이해증진에 헌신한다. 전쟁을 경멸한다. 전쟁을 준비할 의도에서 취해진 모든 행위는 위헌적이다.

헤센주 병역거부법(사민당초안 1948) 제1조: 공민은 군복무 또는 전쟁참여를 강요받지 않으며,

수단으로 이해되었다.⁶⁾ 이러한 평화주의 정신은 1949년에 제정된 서독의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제26조의 침략전쟁금지규정 속에 희미하게나마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기본법에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냉전구도하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후에 설립된 북대서양조약 기구에 1954년에 뒤늦게 가입한 서독은 동구사회주의 블록에 대한 옹벽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기본법제정시에 병역의무를 예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1956년 기본법 제7차개정법(제12조)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하였고, 동시에 병역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1960년에는 대체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민간봉사법(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도 마련하였다. 동법의 위헌성문제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민간 대체복무도 헌법합치적이라고 선언하였다.⁷⁾ 의회는 1968년에 기본법의 17차개정(제12a조)을 통하여 종래 기본법 제12조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편제를 정리하였다.⁸⁾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를 모태로 하여 198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법(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에 대한 법제를 완비하였다. 현재 병역거부와 민간봉사⁹⁾를 규율하는 법제는 앞서 말한 독일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2a조, 병역법, 병역거부법과 민간봉사법이다. 병역거부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병역거부권의 행사절차, 즉 병역거부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봉사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이행하게 될 민간봉사의 범위, 활동, 비용 등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오히려 군복무와 전쟁참가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바덴주헌법(1947) 제3조: 어느 누구도 병역의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바덴주의 시민은 군복무의 이행을 강요받지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병역거부법(1948): 어느 누구도 병역을 강요받지 않는다.

바이에른 병역거부자처벌금지법(1947) 제1조: 국민은 군복무 또는 전쟁참역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베를린헌법(1950) 제21조 ② 누구나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유한다.

인용은 Albert Kröls, *Kriegsdienstverweigerung: Das unbequeme Grundrecht*, Europäische Verlaganstalt, 1983, 20쪽 이하.

6) Otto-Ernst Kempen, "Art. 4 Abs. 3", E. Denninger/H. Ridder/H. Simmon/E. Stein 엮음,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Luchterhand, 1989, 난외번호 2; Albert Kröls, 앞의 책, 21쪽.

7) BVerfGE 12, 45~62쪽.

8) 기본법 제12a조(병역의무와 기타의무) ①만18세부터 남성은 군대, 국경수비대 또는 민간구조단 체에서 근무할 의무를 진다.

②양심적인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9) 민간봉사는 Zivildienst의 번역어이다. 종래에는 법전용어로 민간대체복무(ziviler Ersatzdienst) 또는 대체복무(Ersatzdienst)가 사용되었으나 1973년 민간봉사법의 개정을 통해 용어를 간단히 Zivildienst로 고쳤다. 기본법에서는 여전히 대체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대체복무나 민간봉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민간봉사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전투부문에서의 군복무만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군대바깥에서 군대와 관련없는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민간봉사라 할 수 있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지적은 이대훈,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2001년 3월 17일, 53쪽 이하.

III.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된다.¹⁰⁾ 기본법이 병역거부권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다.¹¹⁾ 그러나 일반적인 병역의무와 대체복무가 기본법에 도입되고 병역법이 시행되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다음의 설명은 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간추린 것이다.

1. 양심적 결정

양심이란 관련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명령을 부과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나 의식에 구속되는 사람만이 양심적 이유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의무로 체험하는 바, ‘선’과 ‘악’의 범주를 지향한, 윤리적으로 진지한 결정을 의미한다.¹²⁾ 그러나 법원은 양심의 내용적 기준에 대해서는 단념하고 소극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은 신과의 관계에서만, 신의 명령 하에서만 또는 특정한 세계관 안에서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서유럽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하여 종교는 더 이상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¹³⁾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정한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교파의 신자라는 사실은 병역거부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¹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일정한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의 의미는 일상언어적으로 이해될 따름이며, 양심의 개념, 본질, 기원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론과의 고차원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¹⁵⁾

양심적 결정의 내용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의 주관적 양심만이 결정적이다. 객관적 척도에 입각하여 양심을 평준화하는 것은 양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결정에 어느

10)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1; Martin Morlok, “Artikel 4”, Horst Dreier 엮음, *Grundgesetz Kommentar*, Bd. I, Mohr Siebeck, 1996, 난외번호 59.

11) BVerfGE 12, 45(53)쪽; 69, 1(22)쪽.

12) BVerfGE 12, 45쪽.

13)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들은 병역거부사유를 종교에 한정하지만 서유럽국가들은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14) BVerwGE 75, 188쪽. 특정한 종파(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자격은 종파의 입장과 일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한 징표일 수 있지만, 그 소속여부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단양심(*Gruppengewissen*)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 BVerfGE 12, 45(54)쪽. 근대철학사에서 양심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는 Rainer Eckertz, *Die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ünden aus Grenzproblem des Rechts: Zur Überwindung des Dezisionismu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Nomos, 1986, 46~54쪽.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법원은 양심적 결정을 어떤 의미에서 이든 ‘오류에 찬 것’, ‘바른 것’과 ‘그릇된 것’으로 분류하거나 평가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⁷⁾ 법원의 심사는 양심적 결정의 배후에 있는 양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까지는 확장될 수 없고, 고작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지한 양심적 결정을 내렸는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는 것이다.¹⁸⁾

2. 전쟁의 절대적 거부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선언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구체화한 구병역법 제25조(현재 병역거부법 제1조)¹⁹⁾가 독일과 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정하자 동법률의 위헌논쟁이 촉발되었다.

판례에 의하면 인간생명의 말살에 대한 윤리적 거부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에서 무기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독일과 외국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거부는 절대적인 거부이어야 하지 상황에 따른 거부(situationsabhängige Verweigerung)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전쟁(석유를 놓고 싸우는 걸프전쟁, 동족간의 전쟁, 민병대와의 전쟁), 특정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핵전쟁), 특정국가와의 전쟁, 특정한 상황하에서의 전쟁(독재국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리적인 거부가 아니므로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판례에 의하면 방어전쟁의 정당성을 시인하거나 방어전쟁에의 참여의사를 지니면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²²⁾ 또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정도의 의식, 예컨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정도로는 양심적 결정으로 충분하지 않다.²³⁾ 독일군대를 독일이외의 지역에 투입할 가능성만으로 병역거부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²⁴⁾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견해는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한다.²⁵⁾ 이들은 상황에 따른 거부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만이 양심적 결정의 다층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구병역법 제25조

16)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4.

17) BVerfGE 12, 56쪽; BVerwGE 70, 216쪽; 79, 27쪽.

18) BVerwGE 75, 188쪽; 79, 27쪽; Rainer EcKertz, 앞의 책, 55쪽 이하; Hans-Theo Brech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4. Aufl., C.H.Beck, 1999, 2쪽.

19) 구병역법 제25조 ①: 양심적 이유로 국가간의 온갖 무력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한 연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연방군대 밖에서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법 제1조: 양심적 이유로 국가간의 온갖 무력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한 연유로 기본법 제4조 제3항 1문을 원용하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기본법 12a조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로서 연방군대 밖에서 민간복사를 이행해야 한다.

20) BVerfGE 12, 45쪽.

21) BVerfGE 12, 45(57)쪽; 48, 127쪽; 69, 1(23)쪽; BVerwGE 83, 358(371)쪽.

22) BVerwGE 49, 75; BVerwG, Beschl. v. 8. 11. 1994=NJW 1994, 603쪽.

23) BVerwGE 38, 359쪽.

24) BVerwG, Beschl. v. 8. 11. 1994=NJW 1994, 603쪽.

25) 위헌이라는 견해의 소개는 Otto-Ernst Kempen, 앞의 글, 주18 참조.

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양심적 결정의 무제약성을 살인금지명령의 획일적 적용으로 오해한 나머지 오로지 ‘독단적 평화주의자’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는다.²⁷⁾ 양심적 결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본성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양심적 결정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의 구체적인 차이를 식별해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도야시키게 된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전쟁과 병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영역에서는 그 차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일체의 폭력을 거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경찰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는 폭력을 긍정하는 태도도 양심적 근거에 입각한 병역거부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긴급상황의 경우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에게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세도 양심적 근거에 입각한 병역거부와 모순되지 않는다.²⁸⁾

3. 거부대상으로서 병역

독일에서 병역은 크릭스딘스트(Kriegsdienst)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쟁복무를 의미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전쟁복무는 병역에 포함된다. 한편 평화시의 군복무는 병역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적절하게 병역은 전쟁복무 뿐만 아니라 평화시의 군복무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⁹⁾ 그리고 기본법 제12a조 제2항도 전쟁복무와 평화시의 군복무를 동일하게 병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기본법 제4조 제3항이나 병역거부법 제1조는 거부대상인 병역을 ‘무기를 휴대한 병역(Kriegsdienst mit der Waffe)’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대조직과 복잡한 현대무기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직접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상태에 따라 살상을 야기하는 무기의 투입에 연결되어 있는 활동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후방의 레이더부대에서의 복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대, 즉 후송부대나 위생부대가 있다. 이것들도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는 군대조직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대에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³⁰⁾ 실정법도 대체복무는 연방군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군대조직과 연결시키고 있다(병역거부법 제1조). 그러므로 직접 총기를 휴대하는 병역은 거부하지만 여타의 군복무는 이행하겠다는 의사는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³¹⁾

26) Rainer Eckertz, 앞의 책, 356쪽. 예를 들어 양심적 이유로 특정지역(부모의 모국)에 출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선과 악의 윤리적 범주를 지향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6.

27) Rainer Eckertz, 앞의 책, 361쪽.

28) BVerwGE 44, 313쪽; Hans-Theo Brecht, 앞의 책, 3쪽.

29) BVerfGE 12, 56쪽.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Roland Fritz, *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2. Aufl., Luchterhand, 1985, 29쪽 이하.

30)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1;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10.

31) BVerwGE 44, 313쪽; 49, 73쪽.

4. 민간봉사의 거부

독일의 실정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에게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아주 드물게 민간봉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거부자(Totalverweigerer) 또는 이중거부자(Doppelverweigerer)라고 하는데, 법원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과 병역거부법 제1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민간봉사의 거부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³²⁾ 그러나 완전거부의 문제는 확립된 판례와는 달리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제4조 제3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목적은 국가적인 봉사의무전체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의 효력에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의 자유의 효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또한 제4조 제1항(양심의 자유)과 제3항(양심적 병역거부권)에서 운위되는 양심이 내용상 동일한 것이고,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데에 제4조 제1항을 원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에게 민간봉사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법 제4조 제1항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³⁵⁾ 현재로서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만약 민간봉사마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간봉사법 제53조(무단이탈죄)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³⁶⁾

5. 민간봉사의 면제

민간봉사법은 민사봉사의 배제사유 및 면제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징역 1년 이상의 범죄 또는 평화교란죄, 내란죄 등으로 6월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고 중앙신분등록부(Zentralregister)에서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중인 자, 보안처분중인 자는 민간봉사에서 배제된다(민간봉사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개신교회의 성직자, 부제서품을 받은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여타 종교의 상근성직자³⁷⁾는 민간봉사로부터 면제된다(동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병

32) BVerfGE 19, 135쪽; 23, 127쪽; BVerwGE 24, 1쪽.

33)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26.

34)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VVDStRL 28(1970), 74면(주 142); 이에 반해 병역의무의 영역에서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제4조 제1항(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이 대체복무의 거부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는 Herbert Bethge, "Gewissensfreiheit", Josef Isensee/Paul Kirchhof 엮음,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I(Freiheitsrechte), C.F.Müller, 1989, 난외번호 50.

35) BVerfGE 19, 135쪽; 23, 191(194)쪽.

36) 민간봉사법 제53조(무단이탈죄) ①계속적으로 또는 비상상황에서 민간봉사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또는 민간봉사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무단으로 민간봉사를 유기하거나 민간봉사에 불참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미수는 처벌한다.

③범죄자가 1개월 이내에 민간봉사에 복귀하거나 민간봉사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생략)

동조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ans-Theo Brecht, 앞의 책, 206쪽 이하. 완전거부자는 통상 2월에서 8월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37) 상근성직자라 함은 교회의 조직, 관리, 지도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부목사이자 전도

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형제—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매—가 연방생활보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제1조 내지 연방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제1조에 규정된 손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같은 이유로 사망한 경우—단, 사망한 부모의 측에서 그 자가 유일하게 생존하는 아들인 경우—, 병역거부자로서 인정된 자의 두 형제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의 병역 또는 민간봉사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민간봉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민간봉사에서 면제된다(동법 제10조 제2항).

6. 병역과 민간봉사의 관계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나 민간봉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³⁸⁾ 기본법 제12a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병역의무는 일차적인 의무이고, 민간봉사는 양심에 입각한 병역거부라는 특수경우를 대비한 대체근무라는 점이 드러난다.³⁹⁾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추가적으로 일정한 양심적 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무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인이 단순히 민간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는 민간봉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⁴⁰⁾ 따라서 민간봉사는 보충적인 의무가 아니고 오히려 이질적인 의무라고 이해된다.⁴¹⁾ 그러나 오늘날 병역의무자의 3분의 1정도가 민간봉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다.

IV. 병역거부자인정절차

병역거부자인정절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로,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연방민간봉사청(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이 서면심사절차를 진행한다(병역거부법 제4조 제1항). 둘째로, 예비군, 군인, 입대예정자 또는 재신청인들에 대한 인정절차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절차로 결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연방민간봉사청과 병무청—산하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이 조직상으로 별도의 기

설교자인 여호와의 증인이 성직자로서 주당 47시간의 활동을 했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주당 25시간 노동을 한다면 주업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BVerfG, Beschl. v. 12.1.1987=NvWZ 1987, 676쪽. 힌두교의 목회자에게 민간봉사를 면제시킨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은 BVerwG, Urt. v. 20. 3.1987=NvWZ 1987, 698쪽.

38) 병역거부자의 인정절차를 심사방식이 아니라 신고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실제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회는 1977년 병역법개정을 통해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이를 서면으로 선언한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포기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른바 우편엽서절차(Postkartenverfahren)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BVerfGE 48, 127쪽.

39)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52.

40) Herbert Bethge, 앞의 글, 난외번호 58.

41)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23.

관이라는 점이다. 연방민간봉사청의 상위기관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이며, 병무청의 상위기관은 국방부(BMVG)이다.⁴²⁾ 그리하여 연방민간봉사청은 순수민간인(병역미필자)의 신청을,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는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의 신청을 관할한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병역거부법은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어쨌든 인정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은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하다.

1. 신청서류

아래 형식요건은 연방민간봉사청의 서면절차에서 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방민간봉사청은 완비된 신청에 대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이다(동법 제5조 제1항).

1) 신청서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은 접수창구 역할을 하며 병역미필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연방민간봉사청에 이를 송부한다.⁴³⁾ 신청서에는 기본법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2문). 그러나 그 형식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으면 족하다.⁴⁴⁾

2) 이유서

양심적 결정의 동기에 대한 해명은 인격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이유서의 어휘선택, 제목, 형식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당연히 양심적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어야 한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법률은 불변적인 인격체로서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스스로 양심적 결정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귀동냥한 것을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은 인격적 해명이 아니다. ‘상세한’이라는 표현도 사실 불확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교육수준을 상세함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고 있다.⁴⁵⁾ 그래서 대입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에게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상세함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유서가 너무나 짧은 경우라면 상세한 이유서라고 할 수 없다. ‘상세한’ 그리고 ‘인격적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법치국가적 명확성의 원칙이나 행정의 합법률성, 권력분립의 원리, 실효적인 권리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⁴⁶⁾

개별신청인들의 동기는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인도적 근거들이 원용되기도 한다. 병역거부사유로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유대인강제수용소방문, 영화도 자주 원용된다.⁴⁷⁾

42) 병무행정기관은 연방병무청,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순서로 편제되어 있다(병역법 제14조).

43) Hans-Theo Brecht, 앞의 책, 6쪽.

44) 지방병무청에 “나는 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자 합니다”는 확정문구가 인쇄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45) BVerfGE 69, 44쪽.

46) BVerfGE 69, 43쪽; Hans-Theo Brecht, 앞의 책, 6쪽.

3) 이력서

신청인은 상세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이력서는 시간적 공백없이 삶의 중요한 날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력서를 단순히 표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병역 거부와 관련있는 사항들이 반드시 이력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원증명서

병역거부신청서는 관할시청에 신청한 신원조회서를 구비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신원조회서는 제출시점에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인정절차

1) 연방민간봉사청

병역미필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연방민간봉사청이 결정한다. 연방민간봉사청은 서면절차에서 신청서가 완비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권의 근거로 합당하고, 신청인의 전체상황이나 연방청에 알려진 여타사실이 신청인의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을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조 제1항 3호). 사실에 대한 기재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민간봉사청은 신청인에게 이를 보충하거나 입증할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청은 그 이상의 사실규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제2항).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방청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며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연방청은 신청서가 완비되지 못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의 근거로 합당치 않고,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4주 이내에도 신청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동법 제6조 제1항).

2)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예비군, 군인, 입대예정자 또는 재신청자의 인정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배석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위원회는 병역거부결정이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는 경우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1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위원회가 양심적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제출된 서류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 청문을 개최한다.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3) 불복절차

연방민간봉사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동법 제17조), 이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19조).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사안심판소가

47) Daten und Fakten, 7쪽.

결정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3. 병역거부자인정실태

징집대상자중에서 병역거부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에는 전체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른다(표2 참조).

표2. 병역거부자비율

출생년도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징집대상자	624,644	585,419	508,889	432,394	381,394	388,343
병역거부자	62,470	82,313	100,642	109,986	104,889	118,547
거부자비율	10.00%	14.06%	19.78%	25.44%	27.50%	30.53%

출전: Daten und Fakten, 9쪽

병역거부인정신청의 인정결정비율도 매우 높다. 연방민간봉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4년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총 1,588,283건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1,390,359건의 인정결정이 내려졌다. 총신청건수에서 88.76%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것이다. 1984년에는 34,359신청건수에서 23,929건의 인정결정이 이루어지고, 독일통일이후에 신청은 급증하였다. 최근 1999년에는 155,929 신청건에 대하여 133,638건의 인정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민간봉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병역거부자 인정비율은 90%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기각결정의 대부분은 형식요건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표3).

표3. 연방민간봉사청의 병역거부자인정현황

연도	1984		1996		1999		전체(1984-00)	
신청건수	34,359		146,594		155,529		1,588,283	
결정건수	27,508		139,745		154,104		1,566,410	
*인정(\$5)	23,929	86.99%	125,970	90.14%	133,638	86.72%	1,390,359	88.76%
*기각(\$6①1문)	63	0.23%	257	0.18%	278	0.18%	2,705	0.17%
*기각(\$6①2문)	1,014	3.69%	7,617	5.45%	12,000	7.79%	84,161	5.37%
*이송(\$7)	2	0.01%	515	0.37%	916	0.59%	8,707	0.56%
법외결여각하	1,171	4.26%	3,195	2.29%	5,422	3.52%	55,779	3.58%
관할위배이송/철회	1,329	4.83%	2,191	1.57%	1,850	1.20%	24,699	1.58%

* 조문표시(\$)는 모두 병역거부법의 해당조문을 의미한다.

제6조제1항1문: 병역거부근거부적합

제6조제1항2문: 서류미비 및 기한해태

제7조: 기재사항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위원회로 이송/위원회심사)

출전: Daten und Fakten, 12쪽

예비군, 군인 또는 입대예정자의 신청과 연방민간봉사청이 이송한 신청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가 인정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연방민간봉사청,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동심판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절차에서도 80%이상의 신청자가 인정결정을 받는다(표4).

표4.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및 동심판소, 행정법원의 결정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결정수	20,236		11,867		9,654		9,651		10,619	
인정건수	17,841	88.16%	9,814	82.70%	7,873	81.55%	7,716	79.62%	8,752	84.42%
기각건수	2,395	11.84%	2,053	17.30%	1,781	18.45	1,975	20.38%	1,867	17.58%

출전: Daten und Fakten, 14쪽

V. 민간봉사제

1. 민간봉사영역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및 원조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⁴⁸⁾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민간봉사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표5 참조).

민간봉사자는 인정받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한다(민간봉사법 제3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Dienststelle)은 국가의 공공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민간봉사법 제4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시립병원, 대학병원, 환경보호소)이나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가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은 자신의 기관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영조물도 민간봉사자고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세법상의 공익성 내지 공익법인으로서 성격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봉사의 대체수단으로 민방위와 재난구호활동(동법 제14조 제4항), 개발봉사(동법 제14a조 제3항), 해외평화봉사(동법 제14b조)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민간봉사보다 장기간의 봉사를 요한다.

민간봉사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드물지만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봉사법은 완전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자발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기간은 민간봉사보다 1년 이상 장기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⁹⁾ 이 규정의 도입목적은 여호와의 증

48) Hans-Theo Brecht, 앞의 책, 56쪽.

49) 민간봉사법 제15a조(자발적인 근로제) ①병역거부자로 인정되었음에도 양심적 이유로 민간봉사의 이행도 거부하는 자는 병원이나 기타 치료, 보호, 요양 시설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겠다고 확인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근로관계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민간봉사에 소집되지 않는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후 그리고 만24세에 이르기 전에 그가 이행해야 할 민간봉사보다 최소한 1년 이상 긴 기간의 근로관계

인의 민간봉사거부사태를 규율하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⁵⁰⁾ 또한 민간봉사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90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나 민간봉사일자리(Zivildienstplätze)의 숫자도 항상 민간봉사자의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 90년 들어와 매년 15만 명 정도의 민간봉사자가 있었고, 18만 개 정도의 민간봉사자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⁵¹⁾ 그리고 민간봉사자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각지에 민간봉사학교(Zivildienstschule)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5. 민간봉사자활동실태

활동유형	1985년		1993년		1999년	
간호보조업무	40,356	58.4%	80,329	48.5%	107,374	67.4%
수공업	8,426	12.2%	22,454	13.6%	23,343	12.5%
농업	1,381	2.0%	4,579	2.8%	4,111	2.2%
상업/관리업	2,317	3.4%	1,156	0.7%	2,180	1.2%
생활보호업무	3,219	4.7%	8,149	4.9%	9,239	4.9%
환경보호	931	1.3%	5,050	3.0%	6,116	3.3%
운송	2,212	3.2%	3,363	2.0%	2,625	1.4%
환자수송/구조활동	7,547	10.9%	11,407	6.9%	9,978	5.3%
이동사회활동	0	0.0%	20,061	12.1%	13,337	7.1%
장애인보호	2,677	3.9%	8,301	5.0%	7,166	3.8%
장애아동보호	0	0.0%	889	0.5%	1,531	0.8%
스포츠영역	0	0.0%	58	0.0%	223	0.1%
전체	69,066명	100.0%	165,696명	100.0%	187,223명	100.0%

출전: Daten und Fakten, 25쪽

2. 민간봉사기간

기본법은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2a조 제2항 2문).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기간은 10개월이며, 민간봉사기간은 11개월이다. 2002년부터 군복무기간은 9개월로, 민간봉사기간은 10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군복무는 제대 후에도 소집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봉사는 일회의 근무로 소집이 면제되므로 1개월 정도 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간봉사와 군복무의 부담을 비교하여 입법자가 민간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²⁾ 민간봉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장기기간이다. 독일처럼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경우도 있으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⁵³⁾

를 설정하고자 하거나 이미 그러한 근로관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1문이 적용된다.

②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만 27세 이전에 제1항에 언급된 최소기간 동안에 그러한 근로관계에 이미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간봉사의무는 소멸한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귀책사유없이 그러한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투여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봉사로 산입한다.

50) Hans-Theo Brecht, 앞의 책, 121쪽.

51) Daten und Fakten, 19쪽.

52) BVerfGE 69, 28쪽 이하; Herbert Bethge, 앞의 글, 난외번호 61.

53) 유럽에서 군복무기간과 민간봉사기간이 동일한 국가는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첸 등이다.

3. 민간봉사비용

민간봉사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봉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봉사자에 대한 급료, 수당, 비용, 비품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1) 민간봉사자의 비용지급실태

민간봉사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은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봉사자보다 실제 지급받는 액수는 작다.⁵⁴⁾

①급료

1단계 급료(1-3개월차): 일당 14.50DM 월합계 435DM

2단계 급료(4-6개월차): 일당 16.00DM 월합계 480DM

3단계 급료(7개월차 이상): 일당 17.50DM 월합계 525DM

②식비

일당 11.70DM 월합계 351DM

③피복비(자신의 피복을 이용하는 경우)

일당 2.30DM 월합계 69DM

④원격지수당(거주지에서 근무처까지의 거리에 비례)

31~50km 일당 1.00DM 월합계 30DM

50~100km 일당 3.00DM 월합계 90DM

101km이상 일당 6.00DM 월합계 180DM

⑤특별수당과 퇴직금

성탄절수당 375DM(12월 15)

퇴직금 1,500DM(제대일)

⑥교통비(근무처와 거주지 사이)/임대료 별도지급/기타 공무상여비지급

2)비용환급

민간봉사는 군복무와는 달리 압도적으로 사적으로 조직된 시설들에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특수한 봉사이다. 그러므로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민간봉사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연방민간봉사청으로부터 환급받는다(동법 제4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민간봉사자

54)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ans-Theo Brecht, 앞의 책, 173쪽 이하.

의 투입을 통해 발생한 지출중에서 1일기준 12,23DM을 한도로 총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중에서 1,050DM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급료, 특별수당, 공무상 숙박비 및 여비 등은 전액 환급받는다.⁵⁵⁾

VI.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어 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혹함에 대한 집단적 반성이 이제 공명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간의 확신이나 양심의 내용이 보편화 가능한 것이라면 그에 입각한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 만두더라도 최소한 형벌이 득달같이 덤비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겨져야 한다. 병역거부의 문제야말로 양심과 국가이성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례일 것이다. 법과 민주적 다수결원칙의 효력은 양심 앞에서 한계에 직면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세상과 한계가 없다고 태연자약해하는 세상이 있을 뿐이다. 한계를 느끼는 나라는 그것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는 이를 간단히 교도소에서 처리한다. 사실 한계영역은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영역이다. 세상의 모든 한계영역을 거부하는 조직이나 국가는 거대한 사고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히틀러 제국은 아마 그 전형적인 경우일 것이다. 50여 년 간의 우리 법치국가 역시 이러한 한계영역을 들락거리며 그 모든 권력을 심정테러 위에서 수립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깨끗이 부인할 수 있을까. 자유의 나라였다면 법정에서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면 30년이라도 감옥에 있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찌 있을까. 병역거부는 평화주의적 확신에 입각한 것으로 스스로 의문에 싸이지 않고서는 그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영구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연합이나 세계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이성의 견지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판이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분단상황, 전쟁체험, 쓰라리거나 화려한 군경력, 마지막으로 애국심이 처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영국은 1차세계대전의 와중에 병역거부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의무로서 공동체를 강화시킬 의무가 거론된다. 물론 공동체를 국가공동체로 한정해야 하는지 세계공동체로까지 확장해야 하는지는 제쳐두더라도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심정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다른 목소리를 사그리 무시하고 똑같은 행위를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조치일까? 이제 확일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단계를 졸업할 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특정한 종파와 관련해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 경우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애국심이나 신의 본성을 두고 교파간의 내공겨루기나 진리논쟁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기 위해 적개심과 교도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되살려 놓을 때가 다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55) 민간봉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장관의 지침 참조.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1.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의 전개와 참관단의 구성

한국은 50년 간 징병제가 실시된 나라이다. 지난 50여년간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등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투옥되었고, 현재도 1,30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민간과 군대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 분단과 군사독재가 계속되어 온 한국사회에서 징병제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각 방면에서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그 성과는 아직 만족할만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현된 하나의 특징은 인권운동의 부각이다. 지난 시기 의문사, 고문, 불법체포, 폭력적 시위 진압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인권운동의 시각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져 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지금도 술한 노동자와 학생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우리 나라에 1,300 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전부 여호와의 증인으로 국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우리 사회에서 이단자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뒤늦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2월 7일 『한겨레 21』 345호가 「마이너리티」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보도한 이래 이 문제는 각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예비역들은 별때처럼 일어나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들을 공격했다. 이 문제는 최근의 부산대 여학생들의 웹진 『월장』이 학내의 예비역 복학생들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군사주의의 폭력과 직접적으로 만났듯이 되고, 이런 경험은 군대가 남성우월주의의 마초문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는 진원지라는 인식을 여성활동가들 속에 심화시켰다.

30년의 군사독재와 50년의 징병제를 겪은 병영국가 한국에서 군사주의와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놀라울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몇 편 안되는 글도 박노자 교수와 같은 외국인학

자나 권인숙 교수같은 여성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을 뿐, 정작 군대생활을 체험한 남성 학자나 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침묵을 지켜왔다.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군가산점 논쟁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30일 『한겨레 21』 301호가 특집으로 「징병제를 흔들어라!」라는 기사를 다룬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 후 2001년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권인숙 씨가 페미니즘 시각에서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고, 3월 16-17일 이틀 간 파주에서 70여명의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모임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느슨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공동대책위가 조직되어 지난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가 종로성당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5월에는 임종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민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선변호인이 아닌 민선변호인단에 의한 법률구조가 시작되었다. 또 6월 초에는 김삼석 씨가 『반갑다, 군대야!』라는 책을 발간하여 민족민주운동 입장에서 군대 문제를 파헤쳤다. 한편 경찰은 파주 회의가 있는 직후인 3월 20일 ‘군대반대·병역기피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여 민간진영에서의 징병제 반대운동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타이완은 2000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의 활동가들의 큰 관심을 끌어 파주 회의에서는 타이완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의 입법위원(국회의원) 치엔시치에(簡錫堃) 씨를 초청하여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2001년 3월 22일 『한겨레 21』 351호는 타이완 현지취재를 통해 이 제도를 국내에 소개했다. 파주회의 참가자들은 우리와 같은 병영국가였던 타이완에서 이 제도가 실시된 데 대해 비상한 흥미를 갖었고, 치엔시치에 의원이 집행장으로 있는 타이완 촉진화평문교기금회의 초청으로 7월 8일부터 일주일 간 타이완을 방문하여 이 제도의 실시현황을 직접 돌아 보고, 정부관리, 입법위원, 시민운동가, 대체복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타이완 방문이 확정된 이후 3월의 파주 회의와 5월의 토론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참관단이 구성되었다. 참관단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이석태 변호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군경전사순직자가족협의회 이애련 회장, 최영금 선생, 인터넷 신문 『대자보』의 이창은 발행인,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홍창욱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윤 차장,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 임치윤 씨 등과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집행위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포함되었다.

참관단의 주요 일정을 소개하면 도착 다음날인 9일에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첸신민(陳新民) 교수와의 토론, 이 제도를 추진한 사람들의 방법론 교육, 10일에는 타이완 여호와의 증인 본부 방문, 이 제도의 담당 주무부서로 우리나라의 병무청 격인 내정부 역정사(內政部 役政司) 방문,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양로원과 정신지체자 학교 방문, 11일에는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소방서, 시각장애자 학교, 사회봉사센터 방문 및 내정부 부장 접견, 12일에는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한 입법위원들과의 토론회,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들과의 토론회, 타이완에서 군대 내 의문사 등의 해결과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황마마(黃媽媽) 어머니 방문, 13일에는 기자회견, 황마마 어머니 등 군대 내 순직자,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족 면담, 촉진화평문교기금회 회원 및 타이완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등이었다.

2. 타이완에서의 대체복무 제도의 추진과정

치엔시치에 의원은 1996년 2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당시에는 ‘사회역’이라 부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 역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타이완대학 학생회 등 주요 대학의 학생회들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치엔 의원은 학생회와도 접촉하기 힘들어 몇몇 동아리를 찾아 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치엔 의원 등이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자 병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대답없는 메아리와 같던 대체복무 제도 도입운동에 돌파구가 뚫린 것은 1997년 7월 국방부가 「국군정실방안(國軍精實方案)」을 채택하여 군 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한편 치엔 의원은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군복무기간의 단축을 추진했다. 군복무기간의 단축 없이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제기되자 젊은이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8년 7월 치엔 의원은 「타이완의 희망의 복무 - 사회역」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만화가이기도 한 치엔 의원은 이 소책자의 삽화를 직접 그렸다.

이런 활동과 병행하여 치엔 의원은 사회복지단체를 찾아다니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배치될 수 있어 사회복지의 질을 급속히 향상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처음에는 군인들이 와 봐야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시큰둥했다. 그러나 치엔 의원 등이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서 대체복무 제도의 장점을 끈질기게 설명함에 따라 사회복지단체들도 이 제도를 지지하게 되었고, 1998년 8월에는 2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역민간추동연맹’이 결성되었다. 추동연맹은 1999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원주민복지 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널리 선전했다.

한편 감군안 실시 이후 병력 자원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행정원도 대체복무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행정원 내에 전담반이 구성되었고, 8월에는 이 전담반의 핵심요원들이 치엔 의원, 국방부 고위관료 등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여 여러나라의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현황을 시찰하였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도의 실시가 국가의 당면이익에 부합되며, 앞으로 1년 간 이 제도의 준비를 정부의 주요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1999년 5월에는 입법원 내에 「초당파 사회역 추진소조」가 결성되었는데, 225명의 입법위원 중 78명이 참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격인 행정원장은 정부가 2000년 7월부터 사회역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원 내정위원회는 또 치엔 의원 등이 제안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내지 5개월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사회역의 복무기간도 이에 상응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무렵 사회역 추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접속하여 이 제도를 알게되고 지지의 폭을 넓혔다. 이런 여론의 지지와 병력을 줄이는 대신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군부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방부도 태도를 바꾸어 사회역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99년 9월 21일 타이완 중부인 타이중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이재민 구호와 복구건설의 긴박함은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에 힘

을 보내주었다.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여호와의 증인 문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것에 비해 타이완에서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양심법에 관한 논의는 뒤늦게 1999년 10월에 제기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복역 중인 사람은 당시 40여 명에 불과했다.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어 관계인 사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는 인권존중과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의 기독교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침내 2000년 1월 15일 입법원은 「병역법 수정안」과 「체대역(대체복무) 실시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타이완에서는 2000년 3월 18일 총통선거가 실시되어 야당인 민진당의 쉐슈이피엔(陳水扁) 후보가 당선되어 50년이 넘는 국민당의 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즉,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는 민진당 집권 이후이지만, 이미 국민당 통치 하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방침과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민진당의 집권이 이 제도의 정착과 확대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당과 군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일이다.

3.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처음 치엔 의원과 민간단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社會役)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명칭도 체대역(替代役)으로 변화되었다.

1) 인원 및 역종: 현재 10,055명(종교이유 복무자 43명 제외)이 대체복무 중인데 이들을 역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역 5,395 (이 중 교정역이 1,760) / 소방역 1,062 / 사회역 367 / 환경보호역 391 / 의료역 242 / 교육복무역 2,036 / 건설역 272 / 사법행정역 163 / 토지측량역 62 / 외교역 35 / 경제안전역 30

2) 신체 등급, 훈련 및 복무 기한

신체등급은 현역, 체대역, 면제로 나뉘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으로 체대역을 뽑는다. 복무 기한은 현역은 1년 10개월이고 대체복무자 중에서 신체등급상 체대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지만 자원에 의해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개월이 긴 2년 2개월이다. 이들은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8주 간의 역종별 훈련을 받는다. 종교적 이유로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주 간의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이다.

3) 신분 및 대우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나 사병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체대역에는 계급은 없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처럼 봉급이 오른다. 처음에는 이등병 월급인 5,545 NT\$의 월급을 받고 6개월 후 일등병 수준, 18개월 이후 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상등병 수준인 6,595NT\$를 받는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 NT\$가 약 40원이므로 복무연한에 따라 22만원에서 26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다. (즉, 이들의 한 달 급여가 우리나라 사병의 27개월 월급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4.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1) 사회복지의 확대

타이완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복무자들의 절반 가량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의 확대가 원래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수천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참관단이 방문한 기관 중에서 타이난성 노인의 집의 경우 원장은 지난 몇 년 간 자신이 바라던 인력충원이 대체복무자 10명이 배정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독일의 경우 동서냉전의 종식과 통일로 인해 국방위협이 줄어들어 징병제 폐지의 여건이 성숙하였으나, 아직 징병제 폐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약 13만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자들이 사회복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우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타이완이나 한국처럼 현역병들이 2년 이상 복무하는 반면 면제자들은 전혀 군대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역과 면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만큼 크다. 이런 불공평성은 군복무자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의식과 박탈감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의 군가산점 논쟁은 바로 현역복무자들의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또한 현역과 면제 사이의 큰 차이는 기를 쓰고 현역복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원인이 된다. 대체복무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체대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丙種)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 사이의 불공평성을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한 약시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 것이다.

3)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 살릴 기회 제공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4) 현역의 생활개선

대체복무 제도는 사회 뿐 아니라 군대에도 도움이 된다. 대체복무의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현역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역생활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간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조차 자원해서 현역에 입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감소되어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 또 군당국으로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체복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역들의 근무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참관단이 국방부나 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나 군 당국에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바는 없다고 한다.

5)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타이완에는 6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특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

6)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

5. 대체복무 제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형평성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돈있고 뺑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빠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정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치엔 의원, 첸신민 교수 등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제도적 보완에 의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복무 역종 내에서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다. 경찰역, 교정역, 소방역 등의 근무 조건은 다른 역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집단생활을 하므로 현역과 마찬가지로 내무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없고,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20-30명 단위의 내무생활의 경우 사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증대하여 구타, 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 환경보호 업무 등은 업무 자체가 아주 힘이 들어서 기피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교정역, 소방역, 경찰역, 사회역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복무 제도가 일이 고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의견이 인터넷, 친구관계 등을 통해 퍼져 입대 대상자 사이에 대체복무 제도의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대체복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5천명 모집에 9천명이 지원하여 남는 인원은 추첨을 해야 했던 반면, 그 다음 모집에서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반면 교육역 중 학교 경비와 같은 역종은 근무 학교에 따라 할 일이 없는 등 아주 편하여 대체복무 내에서의 근무조건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현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

를 지원한 부유층 자제들이 선호하는 직역이기도 하다. 현역과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역의 복무기한을 역종 별로 다르게 잡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2) 소방역·교정역·경찰역 등의 문제

소방서에 대체근무자를 배치한다는 발상은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 문제로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다. 우리 참관단에는 군경순직자 유가족회의 어머니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은 국내에서 의무소방대에 징집된 청년을 배치하는 문제에 반대하신 분들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의무소방대 증설 문제가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순직한 직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징집자들을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석태 변호사, 유가족회의 이애련 회장과 최영금 선생 등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소방당국과 역정사 관계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이 화재진화의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소방차 관리, 수질 검사, 상황근무, 구출된 인원의 후송 등 보조업무 만을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참관단의 평가회에서는 이런 법규정만으로는 미흡하고, 아예 대체복무자들의 화재현장 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정역의 경우 우리 참관단이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으나 교정역이 배치된 이후 교도소 당국이 일반근무자의 인원을 감축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복무에서 ‘대체’는 현역복무를 사회봉사 등 다른 일로 대체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직원을 대체근무 요원으로 대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일반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들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받은 각 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일반직원을 감원한다면, 이는 대체복무 제도의 참 뜻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징집된 대체복무자들을 일반직 직업 공무원이 해야 할 위험하거나 힘든 일에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3)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문제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고 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300-1400 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개소 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민간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사회봉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일들의 실상을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많다. 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직전훈련(職前訓練)의 경우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로 교육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복지시설에 배정된 후에야 노인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짜증을 받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복무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전출을 원하기도 한다. 대체복무 제도에서 사회역이 확대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6. 대체복무 제도와 군 인권 문제

매일 한두명 씩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타이완의 군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와는 용쟁호투라 해야 할지, 용호상박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난형난제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대 내의 의문사, 폭력, 구타, 욕설 등은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다. 우리 군대는 일본군의 못된 버릇이 남아서 그렇다지만, 타이완 군대는 악명높은 국부군의 후신이다. 그런 타이완의 군대에서 현재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이다. 비록 군대 내의 인권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타이완 군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타이완에는 첸피에(陳碧娥)라는 군대 내의 인권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인권운동가가 있다. 이 분은 우리 참관단의 어머니들처럼 군대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분이다. 그는 자기 본명보다는 아들의 성을 따서 후앙마마(黃媽媽), 즉 황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여느 어머니들처럼 후앙마마 역시 평범한 어머니였다.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성격으로 보아서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던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군은 한국에서 늘 그러는 것처럼 자살이라고 통보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앙마마는 발뺌하고 나선지 6년. 처음 국방부에 갔을 때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던 후앙마마는 지금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방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병권익보장위원회의 자문위원이다. 후앙마마가 국방부장에 의해 이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1999년 9월, 아직 민진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인 국민당 통치 시절의 일이다.

후앙마마의 군중(軍中)인권촉진회는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군중인권촉진카드를 나눠 준다. 이 카드에는 상관이나 고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다. 이 카드를 잃어버려도 걱정할 것이 없다. 후앙마마의 전화번호는 타이완의 각 부대의 막사에 군헌병대 등 폭행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군의 공식기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아예 후앙마마에게 이런 사건 처리를 위한 전용전화를 설치해 주었다. 타이완에는 현재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100여명이다. 후앙마마 등의 노력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을 위한 요양센터가 이미 건립되었고 내년 예산으로 한화 600억원이 책정되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일선부대에서 후앙마마 등은 큰 벽에 부딪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참관단으로 방문한 한국의 어머니들이 보기에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타이완의 군대는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여 타이완으로 쫓겨 온 국부군(國府軍)이다. 이들과 함께 온 이른바 외성인(外省人)들은 타이완 현지인인 본성인들에게는 점령자였다. 그리고 타이완군은 본토수복을 노리며 타이완 전체를 병참기지로 만들어 물적, 인적 자원을 쥐어쥘었다. 타이완 군대의 고위 지휘관들은 외성인인 반면, 하급장교, 하사관, 사병들은 본성인들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 즉 점령자들이 피점령자들을 동원하여 군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타이완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점령자들이 본토수복의 허황된 꿈을 버리게 됨에 따라 타이완의 민주화는 가능해졌고, 군 인권문제 개선의 가능성도 보이게 되었다.

후앙마마는 뜻밖에도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즉 이 제도가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현역 대신 편한 복무를 하게 하고 있을 뿐 군대 내의 인권 개선에 아직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앙마마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군 인권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첸신민(陳新民) 교수는 대체복무가 확대된다면 군입대 예정자들에게 현역과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군대가지 안아도 된다는 선택권 주어졌을 때 현역으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군대도 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구타 등 폭력의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이완의 군 인권문제 개선에서 당당한 첫 발은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 한국에서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제언

1) 대체복무 제도 문제 제기의 원인에서 차이점

한국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반면 타이완은 이 제도 도입에서 이론적 기수 역할을 한 첸신민 교수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 문제 때문에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 타이완의 경우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또 정치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타이완의 경우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도 일반적인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역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타이완의 경우 이 제도가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적 실리 도모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나, 한국의 경우 올 해 초 『한겨레 21』 보도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식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유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등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반발 때문에 국회 공청회가 무산된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 문제로 촉발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막강한 반대 세력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타이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기독교 세력이 공히 약하고, 또 대체복무제도가 사회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진영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2) 감군 문제

병영국가였던 타이완에서 정부 당국이 대체복무 제도를 수용한 것은 타이완이 60만에서 45만 이하로 감군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경우 감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1)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2) 12억 인구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인구 2천3백만의 타이완이 병력으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없으며, 3) 국방부와 군부 지도자들이 병력수보다는 장비현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4) 미국이 끊임없이 감군과 국방력 현대화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감군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어들었으나, 앞으로의 추세는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감군과 국방비 절감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이다. 또 군 내부, 특히 해군과 공군에는 군 병력 감축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병들의 봉급이 월 평균 1만원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력감축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가 타이완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 현재 매년 20만 이상의 청년들이 군대에 간다는 사실은 한국의 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경제관료들이 감군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수혜자 층에 대한 여론의 전파와 흡입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집단은 입영당사자인 청년학생들, 대체복무 인원을 배정받음으로써 활동력과 봉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 등이다. 타이완의 경험은 이들을 설득하고 조직화하여 이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기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추동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타이완의 정치인들이 초당파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지원하고, 또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여론의 지원 속에서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와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집권 보수세력의 태도

외형상 우리가 먼저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는 정권은 빼앗겼지만 사회의 헤게모니는 놓치지 않은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타이완의 외성인들은 본토로 돌아갈 꿈이 깨지면서 이 곳에 뿌를 묻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 과정에서 본지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민주화가 투쟁으로 일관된 것이었다면, 타이완의 민주화에는 투쟁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옛 지배세력의 자기변신이 있었다. 타이완이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화된 나라는 아닐지라도 제일 먼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라는 왕수예평(王雪峰) 의원의 지적에서 그 영광의 절반은 수구반동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자기를 맞추려는 보수세력의 것이 아닐까? 민주화가 필연적인 것을 용인하고,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구 지배층의 실리적 태도는 이 제도가 국가적 합의와 축복 속에서 시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한국사회의 유리한 기반

이상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은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기에 불리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유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첫째, 한국은 타이완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이미 대체복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입대 적령기의 청년들이 꼭 현역이 아닌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그 인원을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약 5만5천명, 전문연구요원이 약 1만5천명, 공익근무요원이 5만5천명, 공중보건의 1천여명 등으로 거의 13만에 달하며, 여기에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체검사에서 면제자를

줄이고 대체복무 등급을 신설한다면 면제자의 상당 부분을 대체복무로 흡수할 수 있어 군복무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현역 복무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병역비리를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8. 맺음말

타이완을 다녀 온 참관단 성원들은 이번 타이완 방문이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참관단 성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지 못한 것을 반성하였다. 참관단 성원들은 우리가 참관하고 온 것을 시민단체 성원들과 공유하고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의 확산을 위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갖기로 하였다. 특히 이 보고회를 계기로 기존의 비공식적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공대위의 구성을 위해서는 영향력과 규모가 큰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학생 단체들과 대학 학생회들과 공동사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단체 및 환경단체들을 향해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선전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문제가 대체복무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시발점이 되었지만,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보편적인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 및 불평등을 낳고 있는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많은 집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할 수 있는 집단들, 예컨대 군부와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대체복무 제도가 완벽한 제도일수는 없으나, 병역비리, 병역제도의 불공평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투옥, 극히 낮은 사회복지 수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시작이며, 이 제도가 한국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사회복지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군축과 개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